

● 제333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 3305)

2025. 11. 28.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동원 의원 발의】

의안번호 3305

I. 조례안 개요

1. 발의경위

가. 발의자 : 신동원 의원 (찬성 28명)

나. 발의일자 : 2025년 10월 20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에서 신체활동장려사업은 직장, 학교 등 생활환경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시는 그간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서울 소재 직장 종사자 및 대학(원)생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해 왔음.
- 그러나 현행 조례상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장려 사업을 수행하고, 참여실적 등에 따라 포인트와 같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해당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이 있음.
-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누락 되어 있는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참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8조, 제9조제2항)
- 나. 그 밖의 문구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비대상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25. 10. 28. ~ 11. 01.)
 -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에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추가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스마트워치와 손목닥터 9988 앱을 활용한 ‘서울형 헬스케어(이하 : 손목닥터 9988)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그간 협행조례 제9조를 근거로, 손목닥터9988 사업 참여자(18세 이상 서울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자영업자, 대학(원)생)들에게 사업 참여실적 등에 따라 연 최대 10만 포인트(=10만 원)를 지원해 왔음.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p>제8조(신체활동장려사업) <u>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u></p> <p>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사업</p> <p>제9조(비용의 지원) ② <u>시장은 제8조 각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u></p> <p>③ <u>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한다.</u></p>

- 그런데 협행조례 제9조제3항에는 비용의 지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동 사업에 참여 중인 ‘서울 소재 대학(원)생’에게

포인트를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조례에 없는 상황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고 그 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① 현행조례를 개정하여 대학생도 추가를 하거나 ② 아니면 대학생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회의록(2025년 3월 5일(수)) >

- 이병도 위원: 손목닥터9988, 이 신체활동에 관련된 사업만 대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꽉꽉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플러스 우리 서울시 직장인까지. 이게 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만을 대상으로 그렇게 조례가 시민 플러스 서울시내 소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고 돼 있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시민건강국: 서울거주 대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 이병도 위원: 아니, 조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 조례를 보면…….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 하거든요. 시민이 아니라 조례에 서울 소재 시민 플러스 서울 소재 직장을 다니는 사람까지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에 없는 대학생이나 자영업자까지 사업의 대상에 포함돼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 조례 체계랑도 맞지 않고,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 시민건강국: 일단 대학생이 빠져 있고요…….
- 시민건강국: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고려를 못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열거 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학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동원 위원: 학생을 포함하시든지 아니면 학생을 빼든지 이런 거죠.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뺀다면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는 문제가 없고, 대학생을 넣는다고 그러면 조례에 그 부분이 없으니까 개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 시민건강국: 정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신동원 위원: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이번 개정안은 현재 손목닥터9988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조례상 명문화된 근거가 없는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신체활동장려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제2항 후

단 신설).

나. 검토의견

- 조례상 명시된 대상자(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 외에 ‘서울 소재 대학(원)생’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다수 의견¹⁾이 있으므로, 서울시가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조례 개정(입법)을 통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밖에 개정안 제5조(신체활동장려 기본계획 수립 등)는 제3조에서 이미 서울특별시를 “시”라 약칭하였기에 약칭을 적용하려는 것이고, 제11조(수당)는 누가(“시장은”) 누구에게(“전문가에게”)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다음 페이지 참조).

1) 자료1: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회의록(2025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 이병도 위원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에 왜 서울시민 외적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자꾸만 문구를 넣어서까지도, 그걸 왜 넣는 거냐 하면 그것들이 안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원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있는 지원이기 때문에 그 문구를 넣지 않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례에 그 문구를 넣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법에 맞지 않는 이런 규정을 넣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것이다.
- 도문열 위원 : 우리가 어떤 법령을 만들어 놓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법령과 조례에 준해서, 법령과 조례를 지켜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행 조례는 이런데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불일치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조례를 사업 운영에 맞게 고쳐야 되겠다 지금 말씀이죠?
- 시민건강국 :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 도문열 위원 :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 시민건강국 : 처음부터 조례를 완벽하게 해 놓고 대상을 했으면 좋은데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를 늘리려는 취지로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대학생들까지 포함해서 하다가 이게 입법상 조례 규정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구나 해서 사후적으로 치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약간 조례보다 더 폭넓게 적용을 해 왔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문열 위원 : 이게 제안사유에 보면 조례와 실제 사업 운영 간의 불일치가 발생했다. 이게 완곡하게 표현해서 사업 운영 간의 불일치지 실제로는 조례 위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법령을 위반하고 조례를 위반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료2: 2025. 8. 13. 법률자문(제목: 손목닥터9988 사업 추진 시 조례상 근거 없는 서울시민 외 지원 가부 검토) 의견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더라도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를 참여대상으로 정한 조례에 위반하여 ‘주민이 아닌 서울 소재 대학생 ‘을 참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고, 이러한 조례 위반 사실에 관한 시의회의 의견권 침해 주장, 시민단체나 언론에 의한 문제 제기 등에 의하여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 소재 대학생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제2조(정의) ----- ----- <u>뜻은</u>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신체활동장려 기본계획 수립 등)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u>서울시</u> 예산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체활동장려 기본계획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시</u> -----.
제11조(수당 등) <u>신체활동장려사업</u>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u>전문가는</u>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u>시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u> ----- <u>전문가에게</u> -----.

2. 종합의견

- 이번 개정안은 현재 손목닥터 9988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조례상 명문화된 근거가 없는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신체활동장려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제2항 후단 신설).
- 조례상 명시된 대상자(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 외에 ‘서울 소재 대학(원)생’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다수 의견이 있으므로, 서울시가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조례 개정(입법)을 통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전 문 위 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우현재	02-2180-8155

의안번호
3305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신동원 의원	2025. 10. 20.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내용		<p>〈개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는 그간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사업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해왔으나 현행 조례상 근거 규정이 누락 되어 있음○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참여 대상자로서 명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와 실제 사업 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 보호 필요 <p>〈주요 입법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소재 대학(원)생을 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및 안 제9조 제2항 후단 신설)			
추진 경과	○ 2025. 10. 20. 조례 개정안 제안				
부 서 검 토 의 견	원안가결(<input checked="" type="radio"/>)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목닥터9988이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에 직장이나 학교를 두고 주된 생활을 영위하는 직장인·자영업자·대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타당한 접근이며,○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서울 소재 대학(원)생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함				
대응 방안					
상 임 위 처 리 결 과					
향후 계획					
담당부서	스마트건강과	팀장	박홍권(☎2133-7562)		
			담당 김진아(☎2133-9690)		